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설계공모를 발주하는 경우 그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이하 공모 정보)를 건축법 제32조에 따라 구축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이하 세움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개별 공공기관 공모 운영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심사위원 심사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24년, 원스톱 공모 운영 서비스를 개발하고 법 제8조에 따라 구축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건축허브)에 이를 도입하였음

해당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모 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 가공,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높은 수요자 만족도 등을 보이고 있으나, 공모 관련 시스템이 세움터와 건축허브로 지속 이원화됨에 따라 통합된 공모 정보의 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 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상 규정된 공모 정보의 공개 채널을 현행 세움터에서 건축허브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모 정보를 통합 관리 및 제공하여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건축허브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공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공모 정보 공개 채널을 건축허브 서비스로 이관(안 제17조)

- 공모 정보의 공개 채널을 세움터가 아닌 건축허브로 변경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하여 공모 행정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

나. 조문 인용 오류의 정정(안 제20조)

- 지방재정법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이 제37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 조문 인용 오류를 정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2항 본문”을 “제37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 등) ① ~ ⑥ (생략)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⑦ -----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 . <후단 삭제>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생략) ② ~ ④ (생략)	2. ----- 제37조의2----- -----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연 락 처	(044) 201 - 3782